



제420회국회(임시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한 등록 취소 등 제재
강화 등 〉

■ 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5462호)

2025. 1.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한 등록 취소 등 제재 강화 등	3

I. 제안경위

2024년 11월 11일 박해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석면안전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2024년 11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작업의 발주자로 하여금 석면해체·제거작업의 감리인을 지정하도록 하고 감리인으로 하여금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관리 및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의 적절성 검토와 이행여부를 확인하여 감리완료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등 감리인의 업무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석면 해체 작업장에서 석면 추정 잔재물이 발견되거나, 감리완료보고서가 허위로 작성되는 등 감리인의 업무가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이에 석면건축물 해체·제거 작업의 감리를 부실하게 하거나 감리완료보고서를 부실하게 작성하는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해 감리인의 등록 취소 등 제재 규정을 강화함으로써 석면건축물 해체·제거작업이 보다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 부실공사 발견 시 작업중지 등 실질적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석면건축물 해체·제거 작업이 보다 안전하게

이뤄질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5항, 제30조의4, 제30조의6, 제31조제4항, 제47조의2, 제49조제3항 등).

Ⅲ. 검토의견

1.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한 등록 취소 등 제재 강화 등

개정안은 석면건축물 해체·제거 작업의 감리를 부실하게 한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해 등록을 취소하는 등 제재를 강화하고(안 제30조제5항 신설, 안 제30조의4제1항제6호 신설, 안 제30조의6제1항, 안 제31조제4항 신설, 안 제47조의2, 안 제49조제3항 등),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 부실공사 발견 시 시정요청 등 실질적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안 제30조4제2항제1호)하려는 것임.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0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감리인 지정 등) ① ~ ④ (생략)	제30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감리인 지정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설>	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주자로 하여금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을 교체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지정에 관한 서류를 거짓이나 그

현행	개정안
⑤ (생략) 제30조의4(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업무 등) ①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 5제1항에 따른 석면농도기준	<u>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u> 2. <u>업무 수행 중 석면해체·제거업자의 위반사항에 대해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시정 또는 작업중지명령을 하지 아니한 경우</u> 3. <u>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등록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u> 4. <u>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30조의 4를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u> 5. <u>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거부하거나 수행하지 않은 경우</u>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제30조의4(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업무 등) ① ----- -----. 1. (현행과 같음) 2. 「산업안전보건법」 제124조 제1항-----

현행	개정안
(이하 이 조에서 “석면농도기준”이라 한다) 준수 여부 관리 3. ~ 5. (생략) <u><신설></u> 6. (생략) ②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은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사업장주변 석면배출허용기준 또는 석면농도기준을 지키기 어렵다고 판단하면 석면해체·제거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u><후단 신설></u> 1. <u>석면해체·제거작업의 시정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u> 2. (생략)	----- ----- -- 3. ~ 5. (현행과 같음) 6. <u>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의 완료보고서 작성</u> 7. (현행 제6호와 같음) ② ----- ----- ----- ----- <u>판단하거나 석면해체·제거업자가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서 및 관련 규정의 내용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해당 석면해체·제거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 이 경우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시정 또는 중지를 요청받은 석면해체·제거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u> 1. <u>석면해체·제거작업의 시정</u> 2.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3.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 5제3항에 따른 건축물이나 설비의 철거 또는 해체 중지(석면농도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생략) ④ 제2항 각 호의 조치를 요청받고 이를 이행한 석면해체·제거업자와 제3항 후단에 따른 작업중지 명령을 받은 석면해체·제거업자가 석면해체·제거작업을 다시 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 또는 석면농도기준의 <u>준수</u>에 필요한 개선계획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석면해체작업감리인으로 하여금 그 개선계획을 미리 검토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생략) 제30조의6(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 취소 등) ① 시·도지사는	3. 「산업안전보건법」 제124조 제3항----- ----- -----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 ----- ----- <u>준수 등</u>----- ----- ----- ----- ----- ----- ----- ----- ----- ⑤ (현행과 같음) 제30조의6(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 취소 등) ① -----

현행	개정안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2호·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4. (생략) 5. 2년에 <u>3회</u>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 경우 6. (생략) <u><신설></u> <u><신설></u> <u><신설></u>	----- ----- ----- ----- -----. -----. 1. ~ 4. (현행과 같음) 5. --- <u>2회</u> ----- ----- 6. (현행과 같음) 7. 제30조의4제1항제6호에 따른 <u>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의 완료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u> 8. 제30조의5제1항에 따른 <u>석면해체·제거작업감리인에 대한 평가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한 경우</u> 9. 제30조의5제1항에 따른 <u>석면해체·제거작업감리인에 대한 평가 결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의 등급을 6년에</u>

현행	개정안
<u><신 설></u> <u><신 설></u> ②·③ (생략) 제31조(발주자의 책임 등) ① ~ ③ (생략) <u><신 설></u> 제47조의2(벌칙) 제30조의4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은 <u>300만원 이하의 벌금</u>에 처한다. 제49조(과태료) ①·② (생략)	<u>2회 이상 받은 경우</u> <u>10.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감리를 부실하게 한 경우</u> <u>11. 다른 행정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요구한 경우</u> ②·③ (현행과 같음) 제31조(발주자의 책임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발주자는 제30조의4에 따라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 한 작업 중지요청 조치를 이유로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변경, 감리원 현장 상주의 거부, 감리대가 지급의 거부·지체나 그 밖에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u> 제47조의2(벌칙) ----- ----- ----- <u>500만원 이하의 벌금</u>----- --. 제49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8. (생략) <u><신설></u> <u><신설></u> 9. (생략) ④·⑤ (생략) ⑥ 제5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권자가 석면조사기관에 대하여 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 ----- -----. 1. ~ 8. (현행과 같음) 9. 제30조제5항의 조치 요청을 받고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 자 10. 제31조제4항을 위반하여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 한 작업 중지요청 조치를 이유로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변경 등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게 불이익을 준 자 11. (현행 제9호와 같음) ④·⑤ (현행과 같음) ⑥ ----- ----- ----- ----- ----- 하며,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석면조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현행법 제30조¹⁾에 따르면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작업의 발주자로 하여금 석면해체·제거작업의 감리인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고, 제30조의4²⁾는 감리인으로 하여금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관리 및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의 적절성 검토와 이행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등 감리인의 업무를 규정하고 있음.

-
- 1) 제30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감리인 지정 등) ① 발주자는 석면해체·제거작업 개시 전까지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석면해체·제거작업의 감리인(이하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한다.
- ② 발주자는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을 지정한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 ③ 발주자는 제2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 ⑤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지정기준, 지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협의하여 공동으로 고시한다.
- 2) 제30조의4(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업무 등) ①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관리
 2.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5제1항에 따른 석면농도기준(이하 이 조에서 “석면농도기준”이라 한다) 준수 여부 관리
 3.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의 적절성 검토 및 계획의 이행 여부 확인
 4. 인근 지역 주민들에 대한 석면 노출방지 대책 검토
 5. 석면해체·제거업자의 관련 법령 준수 여부 확인
 6.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 ②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은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 또는 석면농도기준을 지키기 어렵다고 판단하면 석면해체·제거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시정(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중지(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5제3항에 따른 건축물이나 설비의 철거 또는 해체 중지(석면농도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③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은 석면해체·제거업자가 제2항 각 호의 조치를 요청받고도 석면해체·제거작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지체 없이 작업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 ④ 제2항 각 호의 조치를 요청받고 이를 이행한 석면해체·제거업자와 제3항 후단에 따른 작업중지 명령을 받은 석면해체·제거업자가 석면해체·제거작업을 다시 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 또는 석면농도기준의 준수에 필요한 개선계획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석면해체작업감리인으로 하여금 그 개선계획을 미리 검토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⑤ 제4항에 따른 개선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승인 절차 등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은 학교 등 석면 해체 작업장에서 석면 잔재물 발견, 감리완료보고서 허위 작성 등 감리인의 업무 부실 사례가 지속적으로 지적됨에 따라 부실 감리인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감리인의 업무에 ‘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의 완료보고서 작성’을 명시하고, 부실공사에 대한 실질적인 조치 권한을 부여하여 석면해체현장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참고> 석면감리인 제도 개요

- (근거)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감리인 지정) 및 제30조의4(감리인 업무*)
 - * ▲ 석면해체작업 계획서 적절성 검토 및 이행여부 확인, ▲ 석면해체작업 완료보고서 작성, ▲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확인 등
- (등록기준) 건축사, 기술사 등의 자격 취득 자로 감리교육(35H) 이수자(약 950개소, '24.9.)
- (지정대상) 석면해체면적 800㎡ 이상, 분무재·내화피복재 제거 건축물(연 2천5백여개)

다만, 안 제31조제4항과 제49조제3항에서 발주자가 석면감리인의 작업‘중지’ 요청에 대해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하는 규정과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적용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과 관련하여, 개정 규정을 통해 석면감리인의 조치 권한이 강화되는 것은 ‘시정조치’ 요청 권한이므로 석면감리인의 ‘시정조치’ 요청 등에 대해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할 필요가 있어 보임.

한편, 안 제49조제6항에 따르면 과태료 부과권자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석면조사기관에 대한 「석면안전관리법」 상 과태료 부과처분 사

실 통보 시, 「산업안전보건법」상 해당 석면조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석면안전관리법」의 건축물 석면조사 방법을 위반하였다고 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행정처분 하는 것은 양 법의 목적이 달라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건축물 석면조사 비교표]

구분	목적	적용 대상	조사 범위
「석면안전관리법」	석면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 피해 예방 및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	계속 사용 대상 건축물	석면자재(종류, 위치, 면적, 함유량 등) 조사, <u>위해성 평가, 건축물석면지도 작성</u>
「산업안전보건법」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	철거·해체 대상 건축물	석면자재(종류, 위치, 면적, 함유량 등) 조사

이에 대하여 환경부는 환경부가 관리하는 사용건축물의 석면조사는 고용노동부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지정하는 석면조사기관을 활용하게 하고 있어 부실 석면조사기관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의 관리가 필요하며, 고용노동부에서 관리하는 해체 건축물의 부실 석면조사 행정처분 규정³⁾과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해 업무정지 등 처분이 필요하다는 의견임.

3)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석면조사 방법 위반 : 1차 업무정지 6개월, 2차 지정취소

문 의 처
02)6788-5542